

# 보상위원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화시스템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가 정관 제34조의2 제1항 제4호, 이사회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,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구 성

### 제2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 인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.

### 제3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4조(해임 및 충원)

- ①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한다.
- ② 이사회는 해임,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, 결원이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 종료시까지 결원된 위원을 충원한다. 다만,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,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운 영

### 제5조(위원회)

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6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,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7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8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4장 권한 및 의무

### 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
2.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3. 위원장의 선임
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### 제10조(의무)

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.

1.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고,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**제12조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**부 칙**

본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